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. 6. 28 선고 2022가단71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6. 28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2. 8. 18. 접수 제66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(무변론판결)

판사 이재욱

별지